2022년도 제1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6. 14.(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홍지만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10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91건(안건번호 제2022-58980호~6077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58980호는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천게시물과 별도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58981호~58997호는 웹하드,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60764호~60770호는 웹하드에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48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10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2.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61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안건번호 제2022-58980호는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외 OSP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오히려 해외사업자의 경우 우리와 같이 권위를 지닌 기관에서 요청하면 신속한 조치를 해 줄 가능성이 있음. O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욱 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해외 국가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 법에도 시정권고에 대해 그 대상을 국내에만 한정하는 조항은 없음. 해당 주제를 곧 개최할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 B 위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만한 안건으로 생각됨.

- C 위원: 우리가 규정을 두면 접속차단으로도 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지금 ISP가 접속차단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방법일 수 있음. 그보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OSP에게도 개별 침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 notice&take down 관념으로, 해외사업자 또한 negligence에 의한 항변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임.

- C 위원: 본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매주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다음번 심의에도 안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 A 위원: 우리의 시정권고뿐 아니라 반복침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형사공조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58980호에 대해 원안대

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898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8981호~5899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블로그 이외에, 원저작물인 일본 애니메이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합법 시장이 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본 영상물과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각 방송국, ◁◁◁와 ■■■ 등의 VOD서비스, ●●●●와 같은 각종 OTT서비스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음.

- A 위원: 일본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합법 시장과 불법 시장 중 어느 쪽이 더 규모가 큰지?

- C 위원: 불법 시장의 규모가 큼.

- 오진해 전문위원: 상당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은 최근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 서비스되고 있음.

- A 위원: 이렇듯 불법 시장과 합법 시장이 공존하는 경우 일제 단속을 통해 합법 시장으로 이용자를 집중시킬 수 있음. 집중적이지 않은 단속으로는 불법 시장을 근절할 수 없음.

- C 위원: 저작물들 중 합법 시장에서 접근 불가능한 저작물이 많은 것에도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다중 플랫폼 게임 '◎◎◎◎'의 경우 게임 안에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음악은 최신곡뿐임. 이렇듯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저작물이 한정적이고 모든 권리자의 합법 시장 수익 창출은 오로지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 A 위원: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권리자단체,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요구될 수 있겠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58981호~58997호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8981호~5899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8998호~6076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중점](영화)마녀 (2018) [긴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9014호 '[중점](영화)마녀 (2018) [긴급]'는2018. 6. 27 개봉한 한국영화로 웹하드에서 170포인트에 판매중임.
  ('[중점](음악)라일락 (가수: 아이유) [긴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60065호 ('[중점](음악)라일락 (가수: 아이유) [긴급]'은 2021. 3. 25. 발매한 한국 음악 네이버 카페에서 배포중임.
  ('[중점](방송)유 퀴즈 온 더 블록(2018) [긴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60395호 ('[중점](방송)유 퀴즈 온 더 블록(2018) [긴급]''은 2018. 8. 29.부터 방영중인 한국 예능 웹하드에서 11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 3건을 포함한 3,481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58998호~6076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8998호~6076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60770호~6077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이 현재 긴급대응저작물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영화 '▶▶▶▶▶'임.(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 해당 영화의 전체 분량이 게시되어 있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C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60770호~6077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58980호, 제2022-58981호~58997호, 제2022-60764호~60770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58998호~6076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6. 21.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